

약관(일부)변경 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메리트 업 II 6M 혼합투자신탁 3호

2. 약관변경 주요내용

□ 변경 내용 : 수익자 요청으로 혼합형에서 채권형으로 변경

3. 약관변경 내용

현행	변경
<p>메리트 업 II 6M 혼합투자신탁 3호</p> <p>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0.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 및 한국선물거래소를 포함한다.)의 개장일을 말한다</p> <p>제11조(수익증권의 매각)</p> <p>②수익증권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에 의한 경우에는 모집청약금의 최종납입일 다음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매출에 의한 경우에는 수익증권 매입청약일 다음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p>BEST 메리트 6M 채권투자신탁 3호</p> <p>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0.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단, 토요일은 제외한다.</p> <p>제11조(수익증권의 매각) ①판매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매각한다.</p> <p>②수익증권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에 의한 경우에는 모집청약금의 최종납입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매출에 의한 경우에는 수익증권 매입청약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p>③수익증권의 매각단위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익증권의 최소 발행좌수 단위로 한다.</p>

현행	변경
<p>제12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p> <p>②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비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유가증권등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장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이하 “채권가격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2. 기업어음등 :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채권 기준수익률 3. 양도성예금증서(CD) :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동일한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 	<p>제12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p> <p>②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기업어음등 및 양도성예금증서(CD)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정보공표기관, 채권전문딜러 또는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p>제16조(수익증권의 환매)</p> <p>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하고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일이 위탁회사 영업일인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투자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제16조(수익증권의 환매)</p> <p>②수익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이 경우 환매대금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환매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현행	변경
<p>제20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①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한다.</p> <p>1.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 채를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와 유동성자산,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70%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목의 범위내에서 투자·운용한다. 단,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0% 이상으로 한다.</p> <p>가.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0%이하로 한다.</p> <p>나. 사모사채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3%이하로 한다.</p> <p>다.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제8항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p> <p>라.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 이상으로 한다.</p> <p>마.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 이하로 한다.</p> <p>2. 주식(장외주식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30%이하로 하며, 다음 각목의 범위내에서 투자·운용한다.</p> <p>가. 장외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 이하로 한다.</p> <p>나.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제8항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투자규모 산정은 현물유가증권(주식, 채권)투자금액과 현물유가증권의 가격변동과 동일한 방향의 파생상품 투자금액 【주가지수선물 매수거래 미결제약정액, 코스닥50선물 매수거래 미결제 약정액, 금리선물,통안증권금리선물 매수거래 미결제약정액, 콜옵션매수 지불프리미엄, 풋옵션매도 거래 규모(주가지수옵션행사가격 X 거래수량 X 100,000원)】 을 합산하여 계산한다.</p>	<p>제20조(신탁재산의 운용) ①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한다.</p> <p>1.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범위내에서 투자·운용한다.</p> <p>가.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0%이하로 한다.</p> <p>나. 사모사채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3%이하로 한다.</p> <p>다. 채권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제5항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p> <p>라.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95%이하로 한다.</p> <p>2. 유동성자산 및 기업어음등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이하로 한다.</p> <p>3.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이하로 한다.</p> <p>4. 유가증권등의 대여는 신탁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의 총액의 50% 이내로 한다.</p> <p>5. 금리스왑거래는 신탁재산의 금리스왑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p> <p>6. 제1호 본문의 투자규모 산정은 현물유가증권(채권)투자금액과 현물유가증권의 가격변동과 동일한 방향의 파생상품 투자금액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및 국채선물 매수거래 미결제약정액, 국채선물 콜옵션매수 지불프리미엄, 국채선물 풋옵션매도 거래규모(국채선물옵션행사가격×거래수량×1,000,000원)】 을 합산하여 계산한다.</p>

현행	변경
<p>②제1항제1호에서 “채권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p>③제1항제1호에서 “사모사채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것 2.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A등급이상인 것 <p>④제1항제2호에서 “주식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p>7.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편입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사채권(신탁재산편입일 현재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A-등급이상인 것) <p>③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A-등급이상인 것 <p>④제1항제1호에서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현행	변경
<p>⑤ 제1항제2호에서 “장외주식에의 투자”라 다음 각호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5항에서 규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주권 2.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항의 기업공개에 위한 공모주권 3.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항의 협회등록 공모 주권 4.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주식을 인수하는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p>⑤ 제1항제1호에서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CD금리선물, 동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은 신탁재산의 15%이하로 한다. 다만, 채권과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동일한 방향의 포지션 한도(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는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 제1항제1호에서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 2.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매입 3. 투자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 이내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4.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방법 	<p>⑥ 제1항제2호에서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어음등”에의 투자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로서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A2-등급이상인 것에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 2.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3. 기타 유동성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p>⑦ 제1항제1호에서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2. 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p>⑦ 제1항제3호에서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2. 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현행	변경
<p>⑧ 제1항에서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리선물,통안증권 금리선물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고,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 및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코스닥50선물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00분의 15이내로 한다.</p> <p>제21조(투자신탁운용의 제한)</p> <p>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국채·지방채·통화안정증권, 정부투자기관·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증한 공모채권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재산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2. 위탁회사가 운용을 지시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p>	<p>⑧ 제1항제4호에서 “유가증권등의 대여”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p> <p>⑨ 신탁재산 편입 후 제2항제4호, 제3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p> <p>제21조(투자신탁 운용의 제한)</p> <p>① 위탁회사는 ----- ----- -----아니하다.</p> <p>1. 이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등중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등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유가증권등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신탁재산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1조의5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1조의5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에 신탁재산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현행	변경
<p>3. 위탁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유가증권 등을 투자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p> <p>4.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한 유가증권을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행위</p> <p>5. 이 투자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하는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p> <p>6. 위탁회사가 법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 행위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과다취득행위등 수익자보호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위탁회사가 그 총투자신탁재산으로 전체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주식을 제외한다)에 계열회사 전체의 당해 위탁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재산의 7%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에 투자하는 행위.</p> <p>7. 이 투자신탁재산의 2%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행위</p> <p>②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가격변동 및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위탁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유가증권등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p> <p>3.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을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행위</p> <p>4. 이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하는 유가증권 등의 거래</p> <p>5. 위탁회사가 그 총신탁재산으로 전체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계열회사 전체의 당해 위탁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이 신탁재산의 2%를 초과하여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행위</p> <p>7. 이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p> <p>8.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②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출자전환등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가격변동 및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현행	변경
<p>③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금감위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다.</p> <p>제25조(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②위탁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지금액은 해지좌수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의 처분등에 의하여 현금화한 금액으로 하되, 해지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해지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대상 신탁재산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일부해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p> <p>제26조(투자신탁계약의 해지)</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따라 수익권의 총좌수가 50억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신고하고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다.</p>	<p>④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금감위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다.</p> <p>제25조(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②위탁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지금액은 해지좌수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의 처분등에 의하여 현금화한 금액으로 하되, 해지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해지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대상 신탁재산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일부해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일부해지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탁의 일부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p> <p>제26조(신탁계약의 해지)</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다.</p>

현행	변경
<p>제27조(미수수입금등의 우선충당)</p> <p>①위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 미수수입금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자금으로 우선충당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충당금의 이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p>	<p>제27조(미수수입금등의 우선충당)</p> <p>①위탁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 미수수입금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판매회사의 자금으로 우선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충당에 따른 손익은 판매회사에 귀속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충당금의 이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판매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p>
<p>제28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p> <p>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위탁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위탁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p> <p>③이익분배금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속하는 날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상환금등은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속하는 날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p> <p>④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8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p> <p>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p> <p>③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④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9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p> <p>수익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10년간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상환금등은 위탁회사에게 귀속된다.</p>	<p>제29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p> <p>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된다.</p>
<p>제31조(약관의 변경)</p> <p>①위탁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31조(약관의 변경)</p> <p>①위탁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p>

현행	변경
<p>②금감위는 공익 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회사에게 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회사는 약관을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이를 영업점포내에 1월이상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수익자가 이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⑤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대하여 제1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②금감위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회사는 약관을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판매회사는 이를 영업점포내에 1월이상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수익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⑤판매회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대하여 제1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⑥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중 법 또는 법시행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제32조(위탁회사의 영업양도)</p> <p>②위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내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것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2조(위탁회사의 영업양도)</p> <p>②위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것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현행	변경
<p>③이 투자신탁에 관한 위탁회사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의서 제출기간 내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서 제출 및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없는 수익자는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④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서를 제출하고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대하여는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제34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p> <p>제35조(관계법령등의 준용)</p>	<p>③이 투자신탁에 관한 위탁회사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u>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 이의신청서를</u>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서 제출 및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없는 수익자는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④<u>판매회사는</u>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제34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p> <p>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에 비치하여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5조(위탁회사등의 책임) <신설></p> <p>①위탁회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위탁회사가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p> <p>제36조(관계법령등의 준용)</p>

현행	변경
<p>제36조(관할법원)</p> <p>위탁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p>	<p>제37조(관할법원)</p> <p>①위탁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p> <p>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p>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은 2003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